투자 위험 등급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다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다올 JP 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올 JP 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다올 JP 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 년 10 월 20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 년 10 월 27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788-8400, www.daol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자 요청시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올ESG1등단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

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편입 중인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 2026.10.20)

다올 JP 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DW850)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다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채권 등 가격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서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투자등급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JPMF-글로벌 회사채 펀드(JPMF-Global Corporate Bond Fund)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외국통화표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게 되므로 투자자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 Bloomberg Global Aggregate Corporate Index (TR Gross) Hedged to USD (D-1, KRW) 95% + Call 5%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투자등급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JPMF-글로벌 회사채 펀드(JPMF-Global Corporate Bond Fund)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기준일: 2026 년 9 월 30 일) **명칭**: JPMF-글로벌 회사채 펀드(JPMF-Global Corporate Bond Fund)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JPMorgan Asset Management (Europe) S.à r.l.

	하위 집합투자업자: J. P. 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
행태별 종류	변동자본투자회사(SICAV)
기준통화	미국달러(USD)
설정일 및 설립국가	설정일 : 2009 년 2 월 27 일 설립국가 : 룩셈부르크(Luxembourg) 감독기관: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CSSF)
펀드규모	56.83 억 미국 달러 (한화 약 7.7 조 원, 2026 년 9 월 30 일 기준)
투자목표	글로벌 투자등급 회사채 증권에 주로 투자하고 파생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글로벌 회사채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달성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1)주요 투자대상 자산의 최소 67%가 이머징 마켓을 포함한 전세계의 발행회사들의 투자등급 회사채에 직접 또는 파생상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됩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또한 초국가적 기구, 지방 정부 및 기구들을 제외하고 지역 정부를 포함한(최대 5%) 각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최대 20%까지 투자등급 미만 증권에 투자할 수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등급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최소 51%는 집합투자업자의 독점적인 ESG 평가 방법론 및/또는 제 3 자 데이터를 통해 측정된 좋은 지배구조 관행을 따르는 긍정적인 환경 및/또는 사회적 특성을 가진 발행자에 투자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 가치와 규범 기반 심사를 평가하고 적용합니다. 이러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자의 참여 또는 가치 및 규범 기반 심사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에서 파생되는 수익을 식별하는 제 3 자 제공업체가 의존됩니다. 예외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항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jpmorganassetmanagement.l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위 펀드는 구매한 투자등급이하 증권의 최소 75% 및 투자등급증권의 최소 90%에 대한 투자 결정에 ESG 분석을 구조적으로 포함합니다. (2) 기타 투자대상 조건부자본증권에 최대 10%. MBS/ABS 에 최대 5% 투자 가능합니다.
투자전략 및 비교지수	(1) 투자 접근법 - 국가, 부문 및 발행회사들 전반의 기초적, 양적 및 기술적 요인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 세계적으로 통합된 리서치 중심의 투자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 글로벌 회사채 시장 전반에서 주로 신용부문 로테이션 및 증권 선정 절차를 통하여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회사채 투자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2) ESG 접근법: ESG 촉진 - 정의: 환경 및 또는 사회적 성격을 촉진합니다. - 기준: 긍정적 ESG 발행인/회사에 특정한 비율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3) 비교지수 -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Corporate Index (Total Return Gross) Hedged to USD

주1) 상기 내용은 한국에 등록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거하여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dsab005/main.do)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상세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관련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신 후 투자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시장 상황, 해외 집합투자업자의 상황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교체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연)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총보수	동종유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		판매보수	형총보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7% 이내	0.847%	**0.60%**	0.87%	1.365%	209	**353**	500	807	1,7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247%	**1.00%**	1.17%	1.766%	181	**367**	557	954	2,114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의 0.35% 이내	0.547%	**0.30%**	0.57%	1.066%	144	**256**	371	611	1,3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747%	**0.50%**	0.74%	1.266%	130	**263**	399	684	1,516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총보수비용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모투자신탁이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안분하여 산출된 값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하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기타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 9월말 기준으로 보유 중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의 추정치(약 연 0.51%)를 포함하였습니다.]을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값과 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실제 합성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1년 2025/10/17 ~ 2026/10/16	최근2년 2024/10/17 ~ 2026/10/16	최근3년 2023/10/17 ~ 2026/10/16	최근5년 -	설정일이후 2022/10/17 ~ 2026/10/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2-10-17	-8.27	-0.23	3.77	-	2.70
비교지수	2022-10-17	-6.23	1.44	5.14	-	3.93
수익률 변동성	2022-10-17	9.50	8.68	7.63	-	8.35

(주1) 비교지수 : Bloomberg Global Aggregate Corporate Index (TR Gross) Hedged to USD (D-1, KRW) 95% + Call 5%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에 미설정 또 전부해지된 종류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 해지 후 재설정된 종류의 경우에는 재설정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주5)기재가 생략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인력 (2026.09.30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해외-재간접형)				운용경력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장대환	1984년	책임(팀장)	23개	4,574억	-2.97	-	2.08	3.26	11년 6개월
이지원	1991년	부책임(과장)	12개	640억	-	-	2.08	3.26	2년 10개월

	(주1)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 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에 따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이 되는 증권 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보다는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 등 해외경제 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또한, 각 피집합투자기구 해당 운용사의 이벤트 및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 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미국달러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국통화표시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은 수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투자자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제이피모간 펀드(JPMorgan Funds)의 하위 펀드인 JPMF-글로벌 회사채 펀드(JPMF-Global Corporate Bond Fund)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산인 채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주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 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증권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달리 투자했을 경우 갖게 될 이익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방법	**· 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시 경과 후: 4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방법	**· 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 8영업일 지급** **· 17시 경과 후: 4영업일 기준가 9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aol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788-8400/ 인터넷홈페이지: www.daolfund.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27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9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9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9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9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 (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기금,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투자자 등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하거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거래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다올 JP 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DW85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W851
수수료선취-온라인(Ae)	DW85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W8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W8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W8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W8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W8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W8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W8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W86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W8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DW8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DW86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W86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W86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DW86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능)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자금 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

(1)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2)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2022년 8월 22일(예정)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다올 JP 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DW85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W851
수수료선취-온라인(Ae)	DW85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W8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W8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W8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W8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W8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W8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W8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W86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W8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DW8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DW86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W86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W86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DW86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 사항
2022.10.17	최초 설정
2023.01.27	환매청구시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2023.05.0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승환→권정훈)
2023.12.1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권정훈→왕상일)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설(이준)
2024.02.29	운용전문인력 변경 - 책임운용전문인력: 왕상일 → 전우석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이준 → 전무석
2025.06.05	운용전문인력 변경 - 책임운용전문인력: 전우석 → 박은지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전무석 → 전우석
2025.08.28	운용전문인력 변경 -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은지 → 장대환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전우석 → 박은지
2025.11.13	투자위험등급 변경(4등급 → 3등급)
2025.12.3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은지 → 김수연)
2026.10.27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수연 → 이지원)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대표전화 : 02-788-84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2026.09.30 기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해외-재간접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장대환	1984년	책임 (팀장)	23개	4,574억	-2.97	-	2.08	3.26	11 년 6 개월
	· 주요 이력: - '11.11~'15.04 신한투자증권 S&T 그룹 OTC 부 - '15.04~'18.01 DB 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 '18.02~'20.08 삼성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글로벌채권운용팀 - '20.09~'25.06 KB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해외채권운용실 - '25.06~ 현재 다올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운용본부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해외-재간접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지원	1991년	부책임 (과장)	12개	640억	-	-	2.08	3.26	2년 10개월
	· 주요 이력: - '19.01~'25.06 다올자산운용 멀티에셋투자본부 - '25.07~'26.02 우리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 '26.03~ 현재 다올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운용본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구분	운용 기간
이승환	책임운용전문인력	2021년 8월 20일 ~ 2023년 5월 2일
권정훈		2023년 5월 3일 ~ 2023년 12월 18일
왕상일		2023년 12월 19일 ~ 2024년 2월 28일
전우석		2024년 2월 29일 ~ 2025년 6월 4일

박은지		2025년 6월 5일 ~ 2025년 8월 27일
장대환		2025년 8월 28일 ~ 현재
이준	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23년 12월 19일 ~ 2024년 2월 28일
전무석		2024년 2월 29일 ~ 2025년 6월 4일
전우석		2025년 6월 5일 ~ 2025년 8월 27일
박은지		2025년 8월 28일 ~ 2025년 12월 29일
김수연		2025년 12월 30일 ~ 2026년 10월 26일
이지원		2026년 10월 27일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재간접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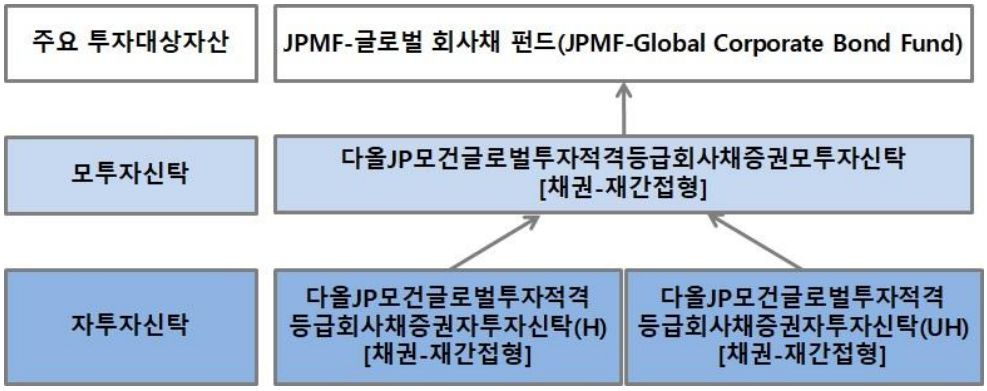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사업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한하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종류별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9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9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9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9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 (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기금,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투자자 등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하거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거래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차이>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지급비율(%)</th></tr>
<tr><th>선취판매수수료</th><th>후취판매수수료</th><th>환매수수료</th></tr>
<tr><td>수수료선취-오프라인(A)</td><td>납입금액의 0.70%이내</td><td rowspan="14">해당사항없음</td><td rowspan="14">해당사항없음</td></tr>
<tr><td>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td><td rowspan="2">납입금액의 0.35%이내</td></tr>
<tr><td>수수료선취-온라인(Ae)</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td><td rowspan="13">해당사항없음</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Ce)</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td></tr>
<tr><td>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td><td>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td></tr>
<tr><td>지급시기</td><td>매입시</td><td>-</td><td>-</td></tr>
</table>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보수합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20	0.60	0.03	0.017	0.847
수수료선취-온라인(Ae)		0.30			0.54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33			0.5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00			1.24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50			0.7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55			0.7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03			0.2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			0.2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15			0.3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58			0.82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29			0.5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0.28			0.52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0.14			0.38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25			0.49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21			0.4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0.19			0.437

주)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당해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명 / 자투자신탁명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80% 이상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80% 이상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주요 투자대상>**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글로벌 투자등급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JPMF-글로벌 회사채 펀드(JPMF-Global Corporate Bond Fund)(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서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①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필요성

이 투자신탁은 코로나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률이 수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투자등급 회사채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채권 만기 보유 수익률에 대한 수혜를 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 대비 일정부분 안정성이 확보되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선정기준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 전체 평균 신용등급을 Investment Grade (BBB-) 또는 그 이상으로 하며, 글로벌 회사채

편입비중을 최소 67%로 하며 투자등급 미만 신용등급 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등급 미만 회사채 투자 비중은 20% 이하로 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제외 기준) 회사채 외 다양한 국가의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도 투자가 가능하나, 국제연합 기구 및 지방정부 발행 채권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③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여부 및 실사 방법 이 투자신탁은 채권시장 전반적인 분석과 편입을 고려하는 회사채 또는 국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진행합니다. 경제 성장률 및 물가수준에 대한 분석 및 판단, 채권의 신용등급 타당성, 해당 국가 또는 기업의 현금흐름의 안정성 등 다양한 분석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80% 이상**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	**10% 이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만기 1년 이내인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및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자세한 투자대상은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1)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단,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6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 통화 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외국거래상대방과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을 포함(이하 "채권 및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⑥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⑦	증권 대여[2)]	50% 이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⑧	증권 차입[3)]	20% 이하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어음등,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차입허용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내지 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자세한 투자대상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3.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	

	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주)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제한>

(1)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①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②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 가능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파생결합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 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③	파생상품 투자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경우〉 ⑧의 (가) 또는 (나)을 적용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 3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계열회사 지분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⑨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⑤ 내지 ⑧, '나. 투자제한' ②, ④ 내지 ⑦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 월간은 '나. 투자제한' ②, ④ 내지 ⑥, ⑦의 (가) 및 (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제이피모간 펀드(JPMorgan Funds)의 하위 펀드인 JPMF-글로벌 회사채 펀드(JPMF-Global Corporate Bond Fund)(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필요성, 선정기준, 실사(Due Diligence)등 관련 정보는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설립국가,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투자설명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조하신 후 투자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시장 상황, 해외 집합투자업자의 상황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교체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투자등급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JPMF-글로벌 회사채 펀드(JPMF-Global Corporate Bond Fund)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외국통화표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게 되므로 투자자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글로벌 투자등급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JPMF-글로벌 회사채 펀드(JPMF-Global Corporate Bond Fund)에 투자하므로, 이러한 운용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다음의 비교지수를 선정하였사오니 투자판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Bloomberg Global Aggregate Corporate Index (TR Gross) Hedged to USD (D-1, KRW) 95% + Call 5%**

Bloomberg Global Aggregate Corporate Index는 블룸버그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써 글로벌 투자적격등급 회사채를 대상으로 산출한 채권 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지수로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와의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복합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나. 위험 관리

[환율변동 관련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미국달러화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은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이 투자신탁에서는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기 보다는 외국통화에 대한 노출도 투자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고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외화 자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환헤지관련 파생상품중 선도환의 경우 비용이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4) 환헤지와 관련하여 환헤지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위험관리]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운용사 홈페이지, Factsheet 및 시장데이터 제공업체(Bloomberg, Factset 등)를 통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성과, 기초지수대비 성과, 보유 종목 및 기타 펀드 운용 관련 현황을 쉽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맞추어 투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외국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라.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운용규모가 크고 설정 및 환매가 일간으로 이루어지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여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편입하는 펀드에 비해 유동성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규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관리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순자산가치의 계산과 하위펀드 및/또는 주식 클래스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지연
- 평가일에 주식 환매를 해당 하위펀드 총자산의 10%로 제한
- 하위펀드의 순현금흐름 대량 반입 또는 반출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가치 희석을 상쇄하기 위한 해당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 조정 등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투자등급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JPMF-글로벌 회사채 펀드(JPMF-Global Corporate Bond Fund)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기준일: 2026 년 9 월 30 일)

명칭	JPMF-글로벌 회사채 펀드(JPMF-Global Corporate Bond Fund)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JPMorgan Asset Management (Europe) S.à r.l. 하위 집합투자업자: J. P. 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
행태별 종류	변동자본투자회사(SICAV)
기준통화	미국달러(USD)

설정일 및 설립국가	설정일 : 2009 년 2 월 27 일 설립국가 : 룩셈부르크(Luxembourg) 감독기관: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CSSF)
펀드규모	56.83 억 미국 달러 (한화 약 7.7 조 원, 2026 년 9 월 30 일 기준)
투자목표	글로벌 투자등급 회사채 증권에 주로 투자하고 파생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글로벌 회사채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달성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1)주요 투자대상 자산의 최소 67%가 이머징 마켓을 포함한 전세계의 발행회사들의 투자등급 회사채에 직접 또는 파생상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됩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또한 초국가적 기구, 지방 정부 및 기구들을 제외하고 지역 정부를 포함한(최대 5%) 각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최대 20%까지 투자등급 미만 증권에 투자할 수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등급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최소 51%는 집합투자업자의 독점적인 ESG 평가 방법론 및/또는 제 3 자 데이터를 통해 측정된 좋은 지배구조 관행을 따르는 긍정적인 환경 및/또는 사회적 특성을 가진 발행자에 투자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 가치와 규범 기반 심사를 평가하고 적용합니다. 이러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자의 참여 또는 가치 및 규범 기반 심사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에서 파생되는 수익을 식별하는 제 3 자 제공업체가 의존됩니다. 예외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항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jpmorganassetmanagement.l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위 펀드는 구매한 투자등급이하 증권의 최소 75% 및 투자등급증권의 최소 90%에 대한 투자 결정에 ESG 분석을 구조적으로 포함합니다. (2) 기타 투자대상 조건부자본증권에 최대 10%. MBS/ABS 에 최대 5% 투자 가능합니다.
투자전략 및 비교지수	(1) 투자 접근법 - 국가, 부문 및 발행회사들 전반의 기초적, 양적 및 기술적 요인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 세계적으로 통합된 리서치 중심의 투자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 글로벌 회사채 시장 전반에서 주로 신용부문 로테이션 및 증권 선정 절차를 통하여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회사채 투자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2) ESG 접근법: ESG 촉진 - 정의: 환경 및 또는 사회적 성격을 촉진합니다. - 기준: 긍정적 ESG 발행인/회사에 특정한 비율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3) 비교지수 -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Corporate Index (Total Return Gross) Hedged to USD

주1) 상기 내용은 한국에 등록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거하여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dsab005/main.do)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상세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관련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신 후 투자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시장 상황, 해외 집합투자업자의 상황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교체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Bloomberg Global Aggregate Corporate Index (TR Gross) Hedged to USD (D-1, KRW) 95% + Call 5%**

[환헤지 전략]

(1)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화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은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이 투자신탁에서는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기 보다는 외국통화에 대한 노출도 투자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고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환헤지와 관련하여 환헤지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에 따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이 되는 증권 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 등 해외경제 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또한, 각 피집합투자기구 해당 운용사의 이벤트 및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 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미국달러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국통화표시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은 수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투자자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미국 관련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는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됩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의 범위는 무한대로 이 투자신탁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크게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종류에 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파생상품의 계약 만기 시 동 계약을 차근월물 등으로 이전(roll over)하여 파생상품 운용을 지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차근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함)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장외파생상품에 속합니다. 장외시장거래는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표준화된 장내시장과 달리 참여자들에게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호장치가 제공되지 않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장내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매연기 등으로 인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글로벌 시장의 투자등급 회사채 및 신용채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결정되므로 투자하는 지역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위험에 노출됩니다.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제이피모간 펀드(JPMorgan Funds)의 하위 펀드인 JPMF-글로벌 회사채 펀드(JPMF-Global Corporate Bond Fund)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산인 채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주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 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증권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달리 투자했을 경우 갖게 될 이익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환매 지연	국제결제와 관련된 송금지연 발생 및 투자대상국가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투자신탁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금 송환 위험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 지연되거나 거절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변경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올ESG1등단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므로 투자자는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신탁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도자산등의 평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

가위험	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 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 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환매대금 마련을 위한 환전과정도 포함)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 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글로벌 투자등급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므로, 시장변동에 따라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 21.22%이므로 **6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다소 높은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전 · 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2025.11.13	4등급	3등급	실제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의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위험정도	상세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실질적으로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아파트나 오피스 등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로 투자회수가 용이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 보증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여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과 동일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다올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단,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97.5% VaR 모형: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합니다.

3.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Commodity,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으로 이 중 각 고위험 자산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후순위 채권, 주권관련사채권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투자등급채권 및 투기등급채권의 구분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기준으로 함)
5.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6.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이상), CP(A2-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8.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10.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11.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2.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3. 상기 분류에 따라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 · 투자대상 · 손실가능성 등에 따라 별도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사업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한하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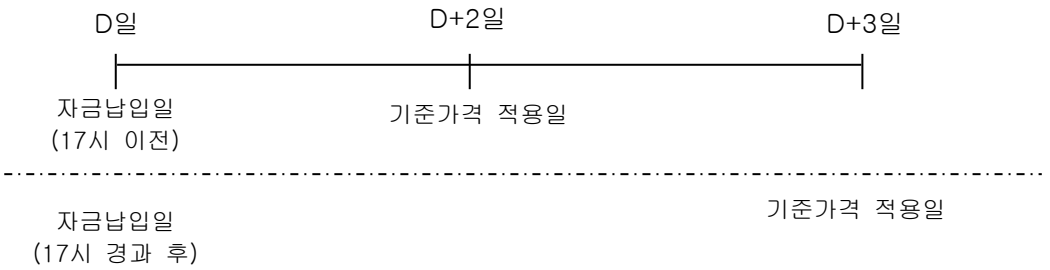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D+7)**에 환매대금 지급

(나)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영업일(D+8)**에 환매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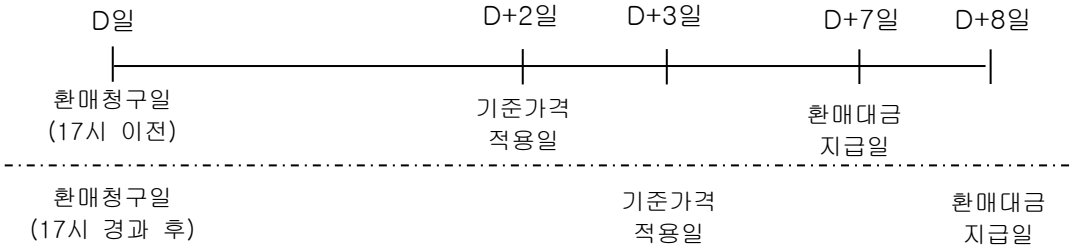

(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라)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17시[오후 5시] 이전에 한 경우에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관련법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관련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 ·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9)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구분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O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 수익증권 간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frac{(\text{자산} - \text{부채})}{\text{총 발행주식 수}}$ +/- 스윙 프라이싱 조정 = NAV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NAV)는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평가일에 해당하는 날 매일 산정됩니다. 각 순자산가치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통화로 표기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가지 계산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는 아래의공식을 사용하여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관련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스윙프라이싱이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투자집합투자기구로의 대규모 현금 유입 · 유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가치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피투자집합기구의 순자산가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 거래량이 특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평가일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자산을 매수 · 매도할 예정 가격과 예상 거래비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로 대규모의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상향 조정되고, 피투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대규모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하향 조정됩니다. 통상적인 시장조건에서 특정 평가일을 기준으로, 조정 수준은 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NAV 의 2%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시장조건에서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상한이 5%로 조정됩니다.

주3)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관련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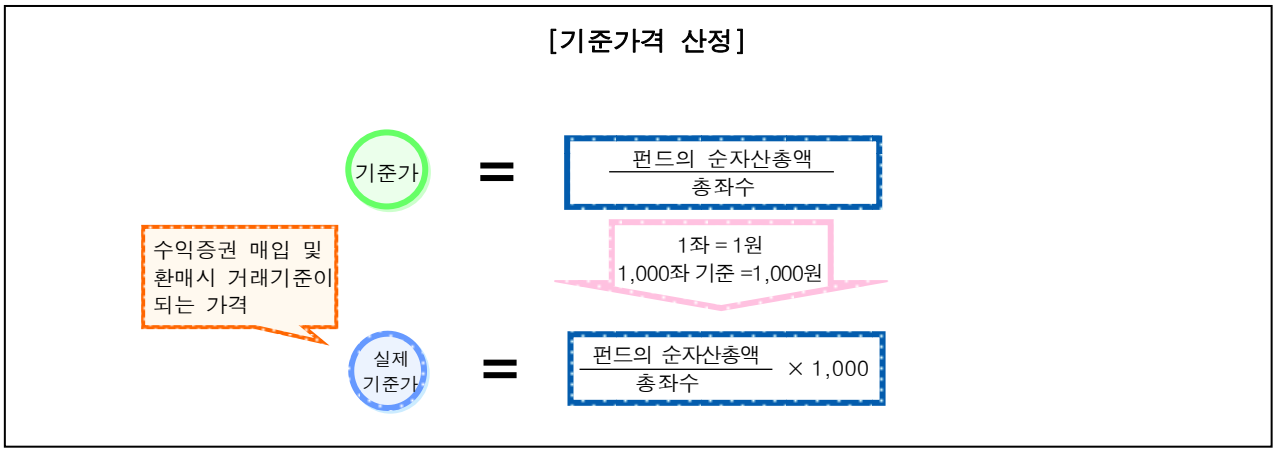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

	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채권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주)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경우도 이 투자신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합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ㅇ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ㅇ 업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함

-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평가 오류 수정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지급비율(%)</th></tr>
<tr><th>선취판매수수료</th><th>후취판매수수료</th><th>환매수수료</th></tr>
<tr><td>수수료선취-오프라인(A)</td><td>납입금액의 0.70%이내</td><td rowspan="14">해당사항없음</td><td rowspan="15">해당사항없음</td></tr>
<tr><td>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td><td rowspan="2">납입금액의 0.35%이내</td></tr>
<tr><td>수수료선취-온라인(Ae)</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td><td rowspan="13">해당사항없음</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Ce)</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td></tr>
<tr><td>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td><td>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td></tr>
</table>

지급시기	매입시	-	-

주) 1. 환매수수료 부과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2. 신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3. 선취판매수수료는 종류 수익증권별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각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4.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총보수 및 비용	증권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20	0.6	0.03	0.017	0.847	0.001	0.848	0.87	1.365	0.0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0.3			0.547	0.002	0.549	0.57	1.066	0.0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33			0.577	0.002	0.579	-	1.096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			1.247	0.002	1.249	1.17	1.766	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5			0.747	0.002	0.749	0.74	1.266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55			0.797	0.002	0.799	-	1.316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03			0.277	0.002	0.279	-	0.796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			0.247	0.002	0.249	-	0.766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15			0.397	0.002	0.399	-	0.916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58			0.827	0.002	0.829	-	1.346	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29			0.537	0.002	0.539	-	1.056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0.28			0.527	0.000	0.527	-	1.045	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0.14			0.387	0.002	0.389	-	0.906	0.00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25			0.497	0.000	0.497	-	1.015	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21			0.457	0.000	0.457	-	0.974	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0.19			0.437	0.000	0.437	-	0.955	0.000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3. 합성 총보수 비용 비율은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모투자신탁이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안분하여 산출된 값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하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기타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보유 중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의 추정치(약 연 0.51%)를 기재하였습니다.]을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값과 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실제 합성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값과 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이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하며,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자 기준값을 기재하였습니다.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①기타비용 종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증권거래비용 종류: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금융비용 종류: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원)

구 분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9,426	352,922	500,179	806,744	1,703,854
수수료선취-온라인(Ae)	144,143	256,206	371,208	610,620	1,311,2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147,218	262,435	380,673	626,823	1,347,1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81,015	366,666	557,184	953,809	2,114,46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29,765	262,853	399,431	683,761	1,515,8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134,890	273,235	415,206	710,766	1,575,6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81,590	165,270	251,143	429,916	953,0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78,515	159,041	241,678	413,713	917,1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93,890	190,185	289,004	494,728	1,096,74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137,965	279,463	424,671	726,969	1,611,59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108,240	219,252	333,175	570,341	1,264,36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107,113	216,968	329,704	564,400	1,251,1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92,865	188,108	285,849	489,327	1,084,77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104,038	210,739	320,239	548,197	1,215,27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99,835	202,227	307,303	526,053	1,166,18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97,888	198,282	301,308	515,791	1,143,440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총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총비용 비율은 일정 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 A 와 종류 C 의 총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 년 9 개월이 되는 시점이고, 종류 Ae 와 종류 Ce 의 총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 년 9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종류 A는 납입금액의 0.70%, Ae 및 Ag는 납입금액의 0.35%의 선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 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 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 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투자신탁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 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 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는 과표기준가격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 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 ·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 · 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 · 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

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분리과세한도	연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가능(2024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 • 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가입자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③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안내' 참조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2기, 제3기 및 제4기의 회계기간은 회계감사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제4기	제3기	제2기
	2026.10.16	2025.10.16	2024.10.16
운용자산	8,147,656,541	12,712,982,557	2,812,433,179
유가증권	8,074,633,334	12,172,402,124	2,685,914,30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73,023,207	540,580,433	126,518,87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1,805,332	136,103,119	39,894,487
자산총계	8,169,461,873	12,849,085,676	2,852,327,66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6,403,211	155,000,633	45,505,628
부채총계	26,403,211	155,000,633	45,505,628
원본	7,017,845,963	10,152,399,172	2,462,578,549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1,125,212,699	2,541,685,871	344,243,489
자본총계	8,143,058,662	12,694,085,043	2,806,822,038
운용수익	-404,914,403	541,988,741	218,123,985
이자수익	5,778,343	10,832,590	2,583,225
배당수익	4,939,337	5,692,218	1,645,782
매매평가차손익	-415,632,083	525,463,933	213,894,978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404,914,403	541,988,741	218,123,985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매매가 발생하지 않아 매매회전율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기 0원, 제3기 0원, 제4기 0원 발생)

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기 0원, 제3기 0원, 제4기 0원 발생)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원, 주, %)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32.58

*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활용합니다.

* 매매회전율은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매매회전율을 자투자신탁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산출된 수치입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원, %)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구분	제4기			제3기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비율(B/A)		금액(B)	거래비용비율(B/A)
주식	-	-	-	-	-	-
주식 이외의 증권	15,956,789,670	-	-	10,779,775,079	-	-
장내파생	-	-	-	-	-	-
장외파생	-	-	-	-	-	-
부동산	-	-	-	-	-	-
기타(레포,대차,콜 등)	-	-	-	-	-	-
합 계	15,956,789,670	-	-	10,779,775,079	-	-

* 거래비용은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투자신탁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산출된 수치입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항 목	제4기	제3기	제2기
	2026.10.16	2025.10.16	2024.10.16
운용자산	8,147,656,541	12,712,982,557	2,812,433,179
현금및예치금	73,023,207	540,580,433	126,518,875
현금및현금성자산	73,023,207	540,580,433	126,518,875
유가증권	8,074,633,334	12,172,402,124	2,685,914,304
수익증권	8,074,633,334	12,172,402,124	2,685,914,304
기타자산	21,805,332	136,103,119	39,894,487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6,783,280	129,946,254	38,082,767
미수이자	82,715	464,647	165,938
미수배당금	4,939,337	5,692,218	1,645,782
자 산 총 계	8,169,461,873	12,849,085,676	2,852,327,666
기타부채	26,403,211	155,000,633	45,505,628
해지미지급금	17,666,623	136,785,476	40,151,599
미지급이익분배금	8,736,588	18,215,157	5,354,029
부 채 총 계	26,403,211	155,000,633	45,505,628
원 본	7,017,845,963	10,152,399,172	2,462,578,549
이익잉여금	1,125,212,699	2,541,685,871	344,243,489
자 본 총 계	8,143,058,662	12,694,085,043	2,806,822,038
부채 및 자본 총계	8,169,461,873	12,849,085,676	2,852,327,666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항 목	제4기	제3기	제2기
	2025.10.17 ~ 2026.10.16	2024.10.17 ~ 2025.10.16	2023.10.17 ~ 2024.10.16
운용수익(운용손실)	-404,914,403	541,988,741	218,123,985
투자수익	10,717,680	16,524,808	4,229,007
이자수익	5,778,343	10,832,590	2,583,225
배당금수익	4,939,337	5,692,218	1,645,78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82,811,108	625,673,518	214,305,043
지분증권매매차익	382,811,108	123,185,058	71,044,275
지분증권평가차익	0	502,488,460	143,260,768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798,443,191	100,209,585	410,065
지분증권매매차손	35,853,605	100,209,585	410,065
지분증권평가차손	762,589,586	0	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404,914,403	541,988,741	218,123,985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40.55	59.11	128.3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백만좌, 백만원)

구분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3/10/17~2024/10/16	5	5	242	248	197	219	50	50
	2024/10/17~2025/10/16	50	50	113	118	68	70	95	101
	2025/10/17~2026/10/16	95	101	277	300	322	360	49	48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3/10/17~2024/10/16	217	216	595	628	493	530	319	360
	2024/10/17~2025/10/16	319	360	3,189	3,774	1,383	1,631	2,126	2,620
	2025/10/17~2026/10/16	2,126	2,620	3,190	4,021	3,804	4,858	1,512	1,7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3/10/17~2024/10/16	0	0	38	38	33	35	5	5
	2024/10/17~2025/10/16	5	5	195	227	90	106	110	133
	2025/10/17~2026/10/16	110	133	1,862	2,329	1,705	2,151	267	29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3/10/17~2024/10/16	139	139	346	373	275	294	211	237
	2024/10/17~2025/10/16	211	237	3,528	4,206	2,104	2,480	1,635	2,003
	2025/10/17~2026/10/16	1,635	2,003	1,321	1,664	1,862	2,345	1,094	1,2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23/10/17~2024/10/16	125	131	446	508	164	187	406	481
	2024/10/17~2025/10/16	406	481	2,036	2,541	1,279	1,573	1,163	1,504
	2025/10/17~2026/10/16	1,163	1,504	745	993	1,249	1,666	659	7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2024/12/06~2025/10/16	1	1	1	1	0	0	1	1
	2025/10/17~2026/10/16	1	1	2	2	3	3	0	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2023/10/17~2024/10/16	405	429	1,491	1,721	499	576	1,397	1,674
	2024/10/17~2025/10/16	1,397	1,674	8,017	10,135	4,590	5,750	4,823	6,327
	2025/10/17~2026/10/16	4,823	6,327	1,206	1,631	2,699	3,638	3,330	4,04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24/04/25~2024/10/16	0	0	0	0	0	0	0	0
	2024/10/17~2025/10/16	0	0	2	2	1	1	1	1
	2025/10/17~2026/10/16	1	1	0	0	1	1	0	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2024/04/25~2024/10/16	0	0	0	0	0	0	0	0
	2024/10/17~2025/10/16	0	0	31	35	28	31	3	3
	2025/10/17~2026/10/16	3	3	4	5	4	4	3	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퇴직))	2024/04/26~ 2024/10/16	0	0	1	2	0	0	1	1
	2024/10/17~ 2025/10/16	1	1	6	6	3	3	4	5
	2025/10/17~ 2026/10/16	4	5	6	7	5	6	5	6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으며,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당해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기 간	최근 1년 2025/10/17 ~ 2026/10/16	최근 2년 2024/10/17 ~ 2026/10/16	최근 3년 2023/10/17 ~ 2026/10/16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2022/10/17 ~ 2026/10/1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7.90	-0.39	3.85	-	2.86
수수료선취-온라인(Ae)	-7.62	0.47	4.46	-	3.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8.27	-0.23	3.77	-	2.7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7.80	0.27	4.26	-	3.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7.61	0.48	4.47	-	4.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	5.05	-	-	-	5.5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	-7.46	0.63	4.63	-	5.2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7.27	0.69	-	-	2.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7.52	0.58	-	-	2.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퇴직))	-7.50	0.59	-	-	2.61
비교지수	-6.23	1.44	5.14	-	3.93
수익률 변동성	9.50	8.68	7.63	-	8.35

주) 1. 비교지수(벤치마크) : Bloomberg Global Aggregate Corporate Index (TR Gross) Hedged to USD (D-1, KRW) 95% + Call 5%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에 미설정 또 전부해지된 종류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 해지 후 재설정된 종류의 경우에는 재설정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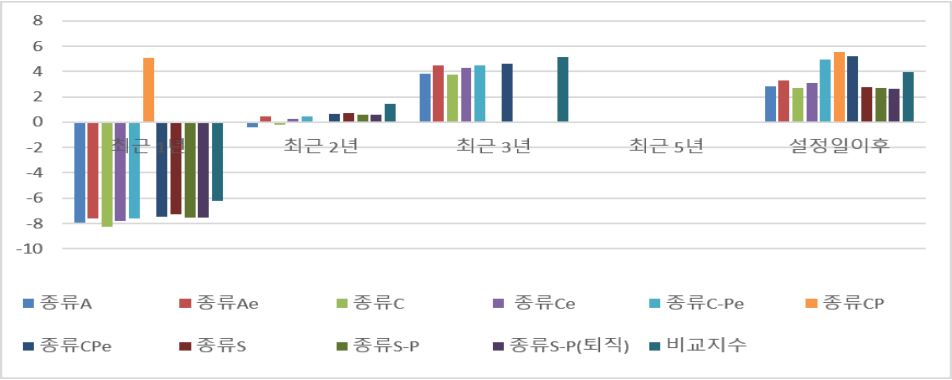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기 간	최근1년차 2025/10/17 ~ 2026/10/16	최근2년차 2024/10/17 ~ 2025/10/16	최근3년차 2023/10/17 ~ 2024/10/16	최근4년 2022/10/17 ~ 2023/10/16	최근5년차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7.90	7.74	12.87	-0.04	-
수수료선취-온라인(Ae)	-7.62	9.26	12.95	-0.1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8.27	8.51	12.26	-0.4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7.80	9.05	12.73	-0.3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7.61	9.27	12.96	7.1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5.05	6.01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7.46	9.44	13.12	7.42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7.27	9.34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7.52	9.39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7.50	9.38	-	-	-
비교지수	-6.23	9.74	12.97	0.36	-

주) 1. 비교지수 : Bloomberg Global Aggregate Corporate Index (TR Gross) Hedged to USD (D-1, KRW) 95% + Call 5%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기준일에 미설정 또 전부해지된 종류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 해지 후 재설정된 종류의 경우에는 재설정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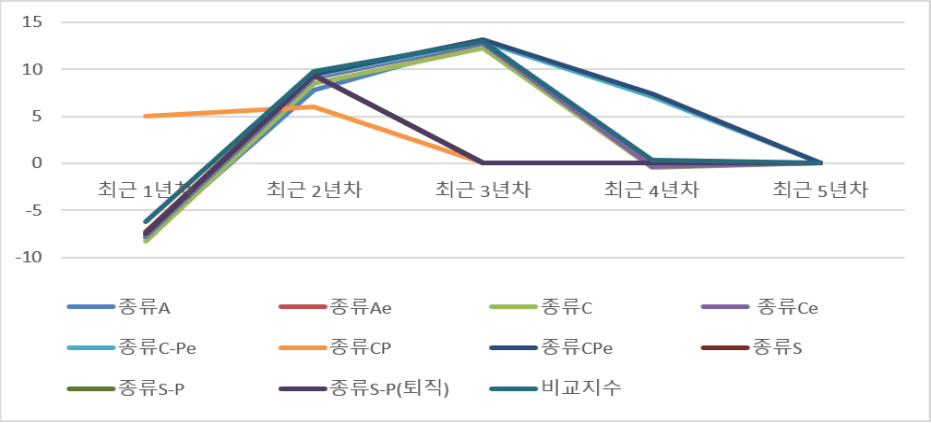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2026.10.16. 기준)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민국 (KRW)	-	-	-	8,075	-	-	-	-	-	73	22	8,169
비중	-	-	-	(98.84)	-	-	-	-	-	(0.89)	(0.27)	(100)
합계	-	-	-	8,075	-	-	-	-	-	73	22	8,169
비중	-	-	-	(98.84)	-	-	-	-	-	(0.89)	(0.27)	(100)

※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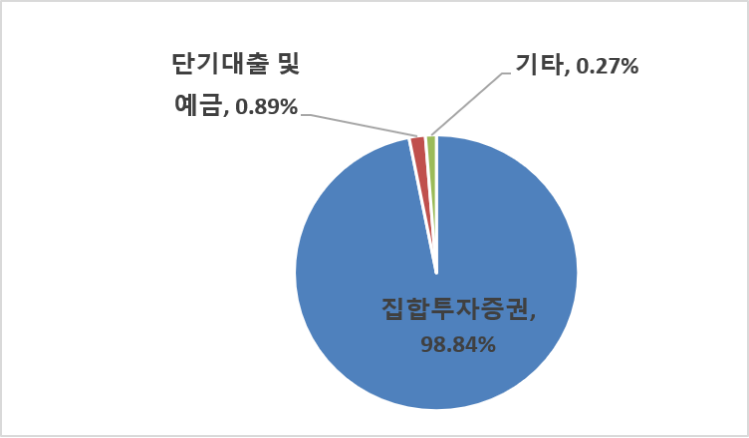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현황>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미국 (USD)	-	-	-	37,596	-	-	-	-	-	-	-	37,596
비중	-	-	-	(100)	-	-	-	-	-	-	-	(98.18)
대한민국 (KRW)	-	-	-	-	-	-	-	-	-	697	-	697
비중	-	-	-	-	-	-	-	-	-	(100)	-	(1.82)
합계	-	-	-	37,596	-	-	-	-	-	697	-	38,293
비중	-	-	-	(98.18)	-	-	-	-	-	(1.82)	-	(100)

※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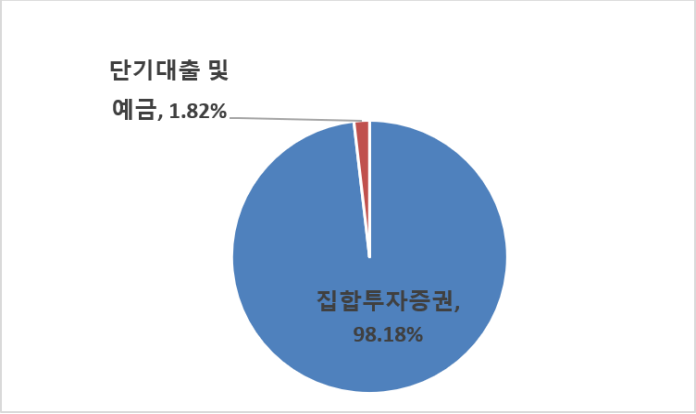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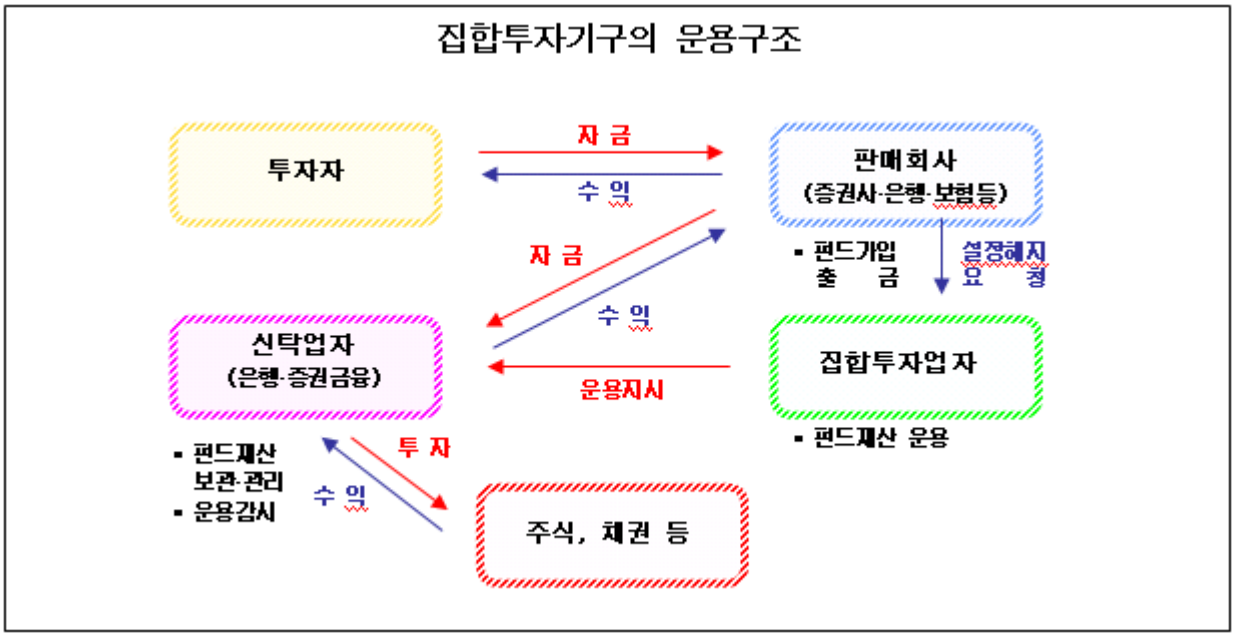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연락처 : 02-788-8400, www.daolfund.com)
회사 연혁	1999. 9. 11 회사 설립(자본금 70 억원) 1999. 9. 22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운용회사 등록 2000. 1. 18 자본금 증자(자본금 150 억원) 2000. 1. 2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7. 3. 13 자본금 증자(자본금 153 억원) 2007. 7. 25 자본금 증자(자본금 165.45 억원) 2008. 7. 2 태국증권사 지분취득(6.86%) 2009. 8. 26 자본금 증자(자본금 166.2 억원) 2013. 4. 10 태국증권사 추가 출자(13.45%) 2013.11. 4 대표이사 조재민 사장 취임 2013.12.30 자본금 증자(자본금 216.2 억원) 2014.11.04 자본금 증자(자본금 441.2 억원) 2015.09.23 자본감자로 인한 자본금 감소(자본금 152.1 억원) 2016. 1. 7 대표이사 김태우 사장 취임 2022. 3. 23 사명변경(KTB 자산운용주식회사 →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2023. 1. 1 대표이사 이창희 사장 취임
자본금	152.1 억원
주요주주현황	다올투자증권㈜(98.62%)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ㅇ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ㅇ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ㅇ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5.01.01 ~'25.12.31	’24.01.01 ~'24.12.31	계정과목	’25.01.01 ~'25.12.31	’24.01.01 ~'24.12.31
유동자산	59,335	49,687	영업수익	33,168	30,218
고정자산	13,131	15,070	영업비용	24,134	45,217
자산총계	**72,466**	**64,757**	**영업이익**	**9,034**	**-14,999**
유동부채	6,099	5,517	영업외수익	2,283	706
고정부채	3,427	3,715	영업외비용	2,133	162
부채총계	**9,526**	**9,232**	**경상이익**	**9,184**	**-14,455**
자본금	15,214	15,214	특별이익	-	-
잉여금	47,726	40,311	특별손실	-	-
자본조정	0	0	**세전순이익**	**9,184**	**-14,455**
기타포괄손익	0	0	**법인세비용**	1,769	-2,693
자본총계	**62,940**	**55,525**	**당기순이익**	**7,415**	**-11,762**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9.30 현재, 단위: 억)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 권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재간접					
수탁고	3,951	5,596	33,234	5,260	18,692	22,159	14,100	4,823	35,090	142,906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02-3455-2114
홈페이지 주소	http:// www.citibank.co.kr
회사연혁등	1981.9.19 설립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 ·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 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신탁업자는 위의 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책임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02-6714-4600)
홈페이지 주소	https://www.hanais.com/
회사연혁 등	2003. 4. 1. 설립 2003. 4. 30. 금융감독원 등록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 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자산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주소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1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02-3215-1400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 02-785-141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www.egap.co.kr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ㅇ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ㅇ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ㅇ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 ㅇ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ㅇ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ㅇ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 ㅇ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ㅇ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ㅇ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ㅇ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ㅇ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ㅇ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ㅇ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ㅇ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 · 신탁계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ㅇ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ㅇ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제2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는 관련법령 · 신탁계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이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다올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daolfund.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 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 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위의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 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펀드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이 투자신탁의 자산 ·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모펀드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aol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 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 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 ·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 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 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증권거래	주식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를 종합하여, 투자참고 항목(Sector별 Analyst Call, 리서치페이퍼, 기업탐방주선, 세미나, 스팟정보), 브로커능력 항목(매매체결 능력, 수도결제능력), 매매수수료 항목(매매시스템의 합리성), 기타 항목(요청자료의 응대 등)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 등	분기별 평가점수에 의한 우수 거래증권사, 선물사 순위를 선정하여 거래하며 내부평가기준에 의한 매니저별 채점방식에 의합니다. 채권의 경우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매매시에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장내파생	주식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 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프로그램 보유 여부,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 운영지원부서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 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투자참고 항목(리서치, 시황, 세미나),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동일 모투자신탁(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인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을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투자합니다.

-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①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의무투자

해당사항 없음

②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추가투자

투자주체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투자목적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 목적
투자시기 및 투자금액	2022년 11월 18일 2억 투자
투자기간	투자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
투자금 회수내역	2025년 12월 30일: 2억(투자시점 기준) 회수

주 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은 상기의 의무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의무투자기간 이전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 2)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② 소규모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④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 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 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⑤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산운용사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자산운용사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주 3) 의무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 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회수할 예정이며, 1 회당 회수금액은 의무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의무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 4)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1 개월 이전에 의무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 5) 투자금 환매시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이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15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고유재산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산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등을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 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련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